

[] 소형항공운송사업
[] 항공기사용사업]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
			25일(소형항공운송사업) 20일(항공기사용사업)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
			팩스번호

신청내용	자본금
	사업 범위 [<input type="checkbox"/>] 소형(여객) [<input type="checkbox"/>] 소형(화물) [<input type="checkbox"/>] 항공기사용사업
	운항예정노선 또는 사업구역
	운항개시예정일
	임원의 명단
	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

「항공사업법」 제10조제1항,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, 제32조제1항에 따라

[] 소형항공운송사업
[] 항공기사용사업]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항공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항공사업법」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.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(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전세 운송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4. 「항공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(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,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·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,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,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	수수료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유의사항

- 등록을 하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.
 - 가. 운항증명(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)
 - 나.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(「항공안전법」 제93조)
-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.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(전화번호 032-740-2147),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(전화번호 051-974-21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